

대통령령 제 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인도네시아공화국

제24조제12항 중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도네시아공화국

제24조의2제1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로부터의”를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부터의”로,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 ----- ----- ----- ----- -----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인도네시아공화국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	⑫ ----- ----- ----- ----- -----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 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⑬ ~ ⑮ (생략)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

⑬ ~ ⑮ (현행과 같음)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
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
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미합중
국·인도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
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고 판정한 때에는 세이프가드조
치를 건의할 때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
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
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1. 인도네시아공화국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

----- 콜롬비아
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
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
도네시아공화국-----
-----.

② -----

--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
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
로부터의 -----

----- 콜롬비아
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
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
도네시아공화국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합중국·인도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

----- 콜롬비아공화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
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
공화국-----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연 락 처	044-203-5859